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4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조계원 · 박용갑
양부남 · 임호선 · 이연희
오세희 · 이상식 · 어기구
이강일 · 이성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·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).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48조제4항 중 “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2.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) (생략)	제27조(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u>
제48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	제48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	④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</u>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

<u><신 설></u> ⑤ (생 략)	<u>2.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 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</u>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